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42
------	-----

2023. 04. 26.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03월 29일, 도문열 의원 외 42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04월 0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3.04.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도문열 의원)

1. 주 문

-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구역 안 감면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나, 서울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부산 문현동의 경우, 2017년 1개 기업에 100만원의 법인세 감면 이후 조세 지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특례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실정임.
- 이처럼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에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
- 반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선진국은 서울과 달리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대 25%, 소득세율은 45%이나, 홍콩은 각각 16.5%와 17%, 싱가포르는 17%와 22%로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임.
- 심지어 외국인 법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를 3~4%p 낮춰 주거나(홍콩),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5~10%p 할인해주는(싱가포르)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에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이송처 :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건의안의 개요

- 금융중심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서울의 여의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조항에 따라 특례에서 제외되고 있어 원활한 투자와 기업 유치를 위해 법 개정을 촉구·건의함.

나. 금융중심지 현황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통해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도하고자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중심지법’)이 제정됨(2007.12.21.).
- 이 법에 따라 2009년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금융인프라 개선과 함께 국제금융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
- 영국의 컨설팅회사 지엔(Z/yen)이 지난 3월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¹⁾ 순위에서 총 130개 도시 중 서울은 10위(직전 11위)를 기록했으며, ‘미래 부상 가능성’은 직전 평가에 이어 1위를 차지함.
- 이는 서울이 가진 글로벌 금융도시조성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시아 경쟁도시인 싱가포르(3위), 홍콩(4위)에 앞서는 글로벌 금융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과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법 규제 완화 등 많은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

1) 국제금융센터지수: 지엔(Z/Yen)사가 2007년부터 전 세계 130여개 도시의 국제금융경쟁력을 평가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지표로, 서울은 2020년 3월 33위 → 2023년 3월 10위로 상승했고, 2022년과 2023년은 연이어 ‘미래부상 가능성’ 1위에 오름.

- 그런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제 혜택에서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금융중심지를 제외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세제혜택과 자격 〉

<p>금융중심지 세제 혜택 자격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금융중심지 제외 <p>금융중심지 세제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법인세·소득세 전액 면제 ▶ 3년 이후 최대 5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

- 이로인해 여의도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지 않아 해외금융기업 유치 등에 많은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 이는 금융중심지 육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금융 시장을 선진화하려는 법령의 입법 취지에 상충되는 것이므로 금융 도시로서의 잠재력이 높은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정될 필요가 있음.

다. 건의안 필요성

- 각 국의 투자유치 경쟁 속에 여의도에 대한 해외기업 투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회에 3건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됨.

- 국회예산정책처는 유경준의원 안은 향후 8년간 9.01억원(연평균 1.13억원), 성일종의원 안은 향후 5년간 총 2.25억원(연평균 0.45억원), 김민석의원 안은 향후 9년간 총 11.27억원(연평균 1.25억원)의 세제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 추계함.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현황 >

발의일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022.09.23.	유경준의원(국민의힘)	수도권 배제 규정 삭제, 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2022.12.27.	성일종의원(국민의힘)	수도권 배제 규정 삭제
2022.12.29.	김민석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중심지 명문화, 법인세 감면 적용 기한 삭제

- 서울시도 국회,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법 개정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각종 정책사업을 통해 여의도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별첨자료].
- 국내외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이 입주한 국내 최대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공간으로 여의도 서울핀테크랩을 운영하고, 디지털금융 전문 대학원을 설립해 우수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환경을 조성함.

< 서울 핀테크랩 >

<p>탄생 배경: 2019년 금융중심지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의도에 통합 개관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8층</p> <p>입주 현황: 86개사(2023년 3월) *개관 이후 누적 198개사 입주 및 졸업</p> <p>▶매출액: 1,592억원 ▶투자유치: 728억원 ▶고용창출: 852명 ▶해외진출: 13개사 8개국</p> <p>인센티브: ▶최대 3년간 사무실 공간 제공,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대기업·금융사와 연계해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지원</p>

- 또한, 여의도에 ▶금융중심지 특화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외국인 투자자 방문과 거주 편의를 제공하고, ▶여의도공원을 국제금융 지원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임.
- 현재 해외투자·금융기관을 유치하려는 아시아 경쟁 국가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자국 내 유치를 위한 유인책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
- 홍콩과 싱가포르의 금융활동에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중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중국 상하이·베이징, 일본 도쿄는 해외 금융기관 유치에 중점을 두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여의도는 아시아 금융경쟁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세제감면 등의 유도요인이 부족하여 외국 투자·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아시아 경쟁 도시들의 인센티브 사례 〉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베이징	도쿄
①재무 활동 수익에 우대세율 적용 ②펀드 운용 수익에 법인세, 근로소득세 면제 ③해외기업에 이자비용 공제 등	①법인세 우대세율 적용 ②싱가포르 소재 은행과 거래시 원천징수세 면제 등	①보조금 지급 ②법인세 우대세율 적용 등	①금융기관 사무소·지점 설립시 부동산 구매·임대비용 보조 ②사업 추진 등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 ③보조금 지급 등	①법인 설립비용·사업 진출경비 보조 ②보조금 지급 등

자료: 서울연구원 ‘금융허브 서울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현안’ (2022년10월)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이 국가적 과제를 고려할 때 서울이 해외도시들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기반을 갖추고 경쟁할 수 있도록 여의도 금융중심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여의도 금융중심지를 거점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과 ESG금융으로의 전환 등 당면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도문열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642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도문열, 강석주, 경기문,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영한,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장태용,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3명)

1. 주문

-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구역 안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 3년간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나, 서울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부산 문현동의 경우, 2017년 1개 기업에 100만원의 법인세 감면 이후 조세 지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특례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실정임.
- 이처럼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때문에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음.
- 반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선진국은 서울과 달리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대 25%, 소득세율은 45%이나, 홍콩은 각각 16.5%와 17%, 싱가포르는 17%와 22%로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임.
- 심지어 외국인 법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를 3~4%p 낮춰주거나(홍콩),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5~10%p 할인해주는(싱가포르)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임.
- 이에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다. 기타 : 없음

4. 이송처

- 국회, 기획재정부

서울의 글로벌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감면 배제조항 개정 촉구 건의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구역 안 감면대상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초 3년간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이후 2년간 5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 부산 문현동 2개 지역이나, 서울 여의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부산 문현동의 경우, 2017년 1개 기업에 100만원의 법인세 감면 이후 조세 지출이 전무한 상황으로 특례 조항 자체가 사문화된 실정이다.

이처럼 여의도 일대가 대한민국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영향으로 해외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면하고 글로벌 금융산업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반면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선진국은 서울과 달리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최대 25%, 소득세율은 45%이나, 홍콩은 각각 16.5%와 17%, 싱가포르는 17%와 22%로 서울에 비해 현저히 낮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심지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외국 법인이 고용을 창출할 경우 법인세를 3~4%p 낮춰주거나, 본사를 이전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를 5~10%p 할

인해주는 등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지엔(Z/Yen)에 따르면 2022년 아시아 주요 금융도시들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상하이 6위, 베이징 8위, 서울 11위로, 아시아 최고의 금융허브로 꼽혀온 홍콩이 정치적 리스크로 흔들리며 도약의 기회가 열렸지만 해묵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해외금융기관 유치에 한계가 역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여의도 금융타운을 ‘금융허브특구’로 지정해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한 바, 글로벌 금융허브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금융중심지 지정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항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 안의 금융중심지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다가오는 임시국회를 포함한 모든 법안 심사 일정에서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4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